

의안번호	2212073
의 퇴 인	김예지 의원
회 답 일	2025. 11. 26.
추 계 번호	25B43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매년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5억원(연평균 5억원)으로 추계됨

- 본 추계는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조문에 대하여 일정 예산의 편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봉사동물의 날 (안 제4조의3 신설)	500	500	500	500	500	2,500	500

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유사 기념일 사례를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실시되는 사업의 내용,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의3(봉사동물의 날)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의 사회적 기여를 국민에게 알리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정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봉사동물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2	안 제16조의2(봉사동물 및 은퇴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봉사동물과 은퇴봉사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퇴봉사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시설을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안 제4조의3(봉사동물의 날)	○	• 농림축산식품부 내 유사사례 참고
2	안 제16조의2(봉사동물 및 은퇴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과 은퇴봉사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지원 대상, 지원 범위 및 절차 등 구체적인 계획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4년 기준 활동 중인 봉사견은 약 1,100마리로, 매년 약 150마리(자연은퇴 90, 훈련탈락 60)의 은퇴견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2024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조사된 반려견 양육비용은 마리당 월 24.03만원(양육비 17.52만원, 병원비 6.51만원)이나, 은퇴한 봉사견의 경우 노쇠·병약 등의 사유로 일반 반려견에 비해 양육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은퇴봉사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시설을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개정안에서 보호시설의 지정·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현 시점에서는 보호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 내용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칭) 은퇴견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추진 중으로, 향후 은퇴견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센터의 업무, 규모 등을 검토할 예정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본 추계에서는 매년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
 -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의 날’ 기념행사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동물보호의 날’¹⁾ 기념행사 사례를 참고하여 ‘봉사동물의 날’ 기념행사 및 홍보 등에 연 5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이때, 추계기간 동안 소요비용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2] 동물보호의 날 기념행사 예산: 2022~2026년(안)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2	2023	2024	2025	2026(안)
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 지원(3741-338)	동물복지 인식개선	-	487	250	500	500

주: 대국민 참여 인식개선 캠페인(2023년부터 추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개정안에 따라 매년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5억원(연평균 5억원)으로 추계됨

1) 「동물보호법」

제4조의2(동물보호의 날) 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봉사동물의 날 (안 제4조의3 신설)	500	500	500	500	500	2,500	500

주: 농림축산식품부 유사 기념일 사례를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실시되는 사업의 내용,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조문에 대하여 일정 예산의 편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stone@assembly.go.kr